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18
----------	------

제출년월일 : 2008년 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2조)
- 대상자 선정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는 직전년도 연간 납부건수를 참작하여 선정하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안 제4조)
-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는 세금징수 등 소요비용 만큼 실비로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매년 1월달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안 제6조)
-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 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지방세를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계좌에서 제천시 세입계좌로 납부기한내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 2.“전자송달 납부자”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매년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2. 전자송달 납세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선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는 직전년도 해당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선정한다.

②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연간납부 건별 세금징수 소요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한다.
2. 전자납부송달자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다. 성실납세자 표창

제6조(선정시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은 매년 1월달에 정기적 으로 시행한다.

제7조(명부관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개정 1974.12.27, 1981.12.31, 2006.12.30, 2008.12.31>
- 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12.3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1962.12.29]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1175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6.

제 천 시 장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전자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2조)
- 대상자 선정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는 연간 납부건수를 참작하여 선정하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안 제4조)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는 세금징수등 소요비용 만큼 실비로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79 담당자 : 오경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세무주 사보	세정팀장	세정과장			
오경아	이용덕	01/16 박문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 - 1175호
3. 공고기간 : 2008. 12. 26 ~ 2009. 1. 15.(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불임
6. 공고결과
 - 조회 수 : 103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 끝.